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처분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차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업무 처리에 있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제10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법조문 수정(영 제11조제2항, 영 제12조제2항, 영 제13조 1항·2항·4항, 영 제14조제1항 1항·2항·3항, 영 [별표9] 개정)

나. 외부회계감사 의무적 실시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와 관련된 인용 조문 수정(영 제27조제1항 개정)

다. 과태료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마련하여
집행의 명확성 확보(영 [별표6·8·9]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 ~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9항”을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9항”을 각각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9항”을 “법 제14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0항”을 “법 제14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제11항”을 “법 제14조제1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후단 중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을 “기간의 계산”으로,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을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행정처분”을 “처분”으로, “적발한”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후단 중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을 “기간의 계산”으로,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을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행정처분”을 “처분”으로, “적발한”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따른”을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경우”를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한 날과”를 “받은 날과 그”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 중 “않거나,”를 “않거나,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로 하고, 같은 란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제4호”를 “제3항제4호, 제3항제4호의2”로 한다.

마. 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거나,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4호, 제3항제4호의2	200	30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생략)

④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2. (생략)

② 법 제14조제10항-----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

-----.

-----.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0항-----

-----.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10항-----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
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
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
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
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
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
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
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④ ~ ⑥ (생 략)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
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
조제10항-----

② 법 제14조제11항-----

1. ~ 17.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14조제12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⑧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75